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내 용	접근 경로
공통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인터넷 상담 및 회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 → 법령정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소득공제 자료조회	•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안내] ☎ 126-내선1-5번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현금영수증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안내] ☎ 126-내선1-1번
근로자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안내] ☎ 126-내선1-5번
	간편제출	• 작성된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안내] ☎ 126-내선1-5번
신고결과 조회	•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조회 * '12 ~ '16년 귀속분 조회 가능 * '17년 귀속분은 '18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공제확인서 조회		홈택스 → MyNTS → 지급명세서 등 [안내] ☎ 126-내선1-3번
안내책자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책자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동영상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프로그램	•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 등)	전자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환급신청 •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사용자 설명서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 연말정산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안내] ☎ 126-내선1-3번
	안내책자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동영상 • 원천세 신고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프로그램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간 근로소득

45_page

(-) 비과세소득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차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 이내)
-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 ▶ 연 3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급여액

82_page

(-) 근로소득공제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83_page

(-) 인적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 ·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 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15백만원 이하 100%, 1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등의 경우 30%)를 소득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다만,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은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400만원 한도)

107_page

(-) 그 밖의 소득공제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 (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5억 원 초과	17,060만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 40%) - 2,940만원

산출세액

126_page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150만원 한도) 감면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 자녀 :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종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미용·성형수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자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유형	세액공제 등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이월공제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①)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5년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①-②)×30%		
④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①-②-③)×10%		
⑤ 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 ①-②-③)×30%		5년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신출세액에서 공제
- ▶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금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요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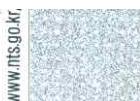
기본 공 제	구 分	공제요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7.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1997.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57.12.31. 이전 1997.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18세 미만	○				
추 가 공 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47.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 分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 · 노인장기요양 ·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 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불가능합니다.

③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④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1999.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동의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예정)까지 해당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흠택스(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08 : 00 ~ 20 : 00)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 제출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개별 안내 예정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보다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 지원
- (3개년 신고내역 및 절세주머니) 최근 연말정산 신고내역과 공제항목, 설명,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

「연말정산시 제공 서비스 4종」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국세청이 모르는 종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예: 안경구입비 등)를 입력하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동 서비스에서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근로소득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

- 기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수정항목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및 환급세액 자동 계산
- '12년 ~ '16년 귀속분 이용 가능('17년 귀속분은 '18.7월 제공 예정)

연말정산 서비스 요약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17.11.7일 제공(1~9월 사용금액)
	절세 계획 수립 지원	절세Tip, 유의Tip, 3년간 추세 등(11월부터 제공)
	연말정산 세액 계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세액 계산의 편의 제공
	맞벌이 부부 세액 비교	모의계산 기능 제공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지급명세서 미리 채움 → 수정 →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서비스	· 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 자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 흠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자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회사에서 간편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용 가능
간소화 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로드 기능 USB, 파일 다운로드 → 회사 프로그램 Up-load 공무원, 대기업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